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효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·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·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대규모 콘서트 및 행사가 진행되는 시립체육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

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관리·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이 설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